

『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5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이창형

나. 제안이유

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
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이용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명칭(안 제2조)

○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「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은,
 -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,
 -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나,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동세탁소 시설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이용료 부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생 략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